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규정

2025. 05. 01. 제정
2025. 09. 01. 개정
2025. 11. 0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전보건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제35조의4에 따라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수 예정자"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 중인 재학생을 말한다.
2. "이수자"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를 완료한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제2장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개설

제3조(이수 허용 학과 등) ①본 대학교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 가능한 학과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가상학과에 편성·운영하는 전공을 포함한다.

② 〈별표 2〉에 의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계열 :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안경광학과, 반려동물과, 응급구조학과
2. 간호대학 : 간호학과
3. 사회실무계열 : 유아교육학과
4. 군사계열 : 의무부사관과, 국방응급의료과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국가자격증 또는 교원자격증 발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의 학과(간호학과 제외)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01.>

제4조(이수 예정자 선발 인원) ①학과의 선발 인원은 선발하는 대상 학년도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학과장은 선발 인원을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인원을 정한다.

1. 학과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2. 학과·학부 내 전공 : 전공 배정 인원의 100% 이내
3. 가상학과(융합전공 포함) :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된 인원 이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선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자격 및 신청 시기) ①지원 자격은 신청 마감일 현재 제1학년 1학기를 등록, 이수 완료하거나 또는 이수 예정인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1. 신청 마감일이 속한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예정인 학생
2. 졸업 유예 중인 학생

②신청 시기는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하고, 매년 마다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개 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선발 및 승인) ①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예정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모든 학과에 적용하는 공통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이수 예정자를 선발하는 학과는 선발 기준과 방법을 지정된 기일까지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된 선발 기준과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로 정한 기간 중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발 학과는 제2항에 따른 선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학기 시작 30일 전까지 이수예정자를 선발한다.

⑤선발된 이수 예정자 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3장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교과목 이수

제7조(교과목 이수) ①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 주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졸업이수 학점으로 산정할 때에는 중복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②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 주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고 주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이수 예정자로 선발되기 전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선발 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교양 교과목 이수는 주전공 이수기준을 적용한다.

⑤복수전공 이수시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 최소 이수학점은 〈별표 3〉 에 의한다.

⑥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의 전공필수 및 선수 교과목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복수전공 미충족자의 부전공 변경) ①복수전공 이수 예정자가 졸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수전공 이수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 예정자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전공 이수 예정자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수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
2. 복수전공 학과에서 전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③복수전공 이수 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부전공 이수 예정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졸업일 60일 전까지 관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부전공 이수 예정자로 승인, 변경된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받은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주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9조(포기) ①이수 예정자가 이수 중인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포기서를 작성하여 졸업일 60일 전까지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포기가 승인된 경우, 종전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주전공 학과의 심의를 거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주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은 공통선택 학점이나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5.09.01.>

제10조(이수 인정) ①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이수 인정은 이수 예정자가 졸업하는 학기에 실시한다.

② 복수전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별표 3〉 에 따라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 최소 이수학점 취득
2. 복수전공 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이수 인정 요건을 달성

③ 〈별표 4〉 에 따라 주전공 및 부전공의 전공 최소 이수학점 취득

④이수 예정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이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학기 중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수 인정원을 작성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본인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이수 예정자가 소속된 학과장은 제4항에 따른 이수 인정원을 확인하여 교무운영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⑥이수 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무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복수전공자의 재학 연한은 주전공학과 졸업 또는 수료 학기에 2년을 가산한다.

제4장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학위수여

제11조(학위 수여) ①이수 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정하여진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복수·부전공 이수 또는 미이수 시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1. 〈별표 3〉 에 의한 주전공 이수 및 학칙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
2. 제10조에 따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구분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학위수여
이수여부	이수완료	이수 중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포기 시, 주전공 학위취득 가능 (취득학점 5학점까지 공통선택으로 인정, 단, 복수(부)전공 신청 전 원소속학과 전공최소이수 학점 취득해야 학위취득 가능) -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할 요건을 갖춘 경우, 부전공으로 변경하여 주전공 학위취득 가능 - 복수전공 포기 또는 부전공(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복수 전공 학위취득 불가

	이수 중	이수완료	주전공 및 부·복수전공 학위취득 불가
	이수완료	이수완료	주전공 및 부·복수전공 학위취득 가능

②복수전공 이수자는 학위증 및 학적부에 이수 사항을 표시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③부전공 이수자는 학위증 및 학적부에 이수 사항을 표시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위임 등) 이 규정 이외에 다전공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0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가상학과를 제외한 학과(부)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규정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11.01.>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 가능학과(제3조 관련)

구분	학 과
2년제	뷰티케어과, 장례지도과, 호텔조리&제과제빵과, 스포츠건강관리과, HiT자율전공학부, 가상학과 제도로 편성 운영하는 전공
3년제	환경보건안전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과학수사학과, 재난소방·건설안전과, 컴퓨터정보학과, 바이오의약과

※본 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결과 및 각종 평가기준에 따라 이수 가능학과는 조정될 수 있음
※표의 학과(부)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트랙 교육과정 포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설되지 않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이수를 신청할 수 없다.

[별표 2]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는 분야(제3조 관련)

관련 법령 및 근거	양성 분야(직종)
1.「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	
가.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분야	‣ 교사
나.「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사 ‣ 조산사 ‣ 치과의사 ‣ 간호사 ‣ 한의사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	‣ 임상병리사 ‣ 치과기공사 ‣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 ‣ 물리치료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작업치료사 ‣ 안경사
라.「약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약사 ‣ 한약사
마.「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및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 수의사 ‣ 동물보건사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 응급구조사
3.「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1항	‣ 사회복지사
4.「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	‣ 영양사
5. 학군협약학과	‣ 의무부사관 등

※ 해당 법률 및 부서에서 복수(부)전공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5.11.01.>

복수전공 선택시 전공 최소 이수학점(제7조, 제10조, 제11조 관련)

구분	주전공	복수전공	비고(졸업최소이수학점)
2년제(주전공) ↔ 2년제(복수전공)	30	29~30	72
3년제(주전공) ↔ 3년제(복수전공)	45	45	108
3년제(주전공) ↔ 2년제(복수전공)	60	30	108
2년제(주전공) ↔ 3년제(복수전공)	불가		

※표의 학점은 졸업기준 전공 최소 이수학점으로 주전공 학과(부)의 필수 교과목 및 교양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갖추어지므로 졸업 최소 이수학점이 증가할 수 있음

[별표 4] <개정 2025.11.01.>

부전공 선택시 전공 최소 이수학점(제10조 관련)

구분	부전공	주전공	비고(졸업최소이수학점)
2년제	18	40	72
3년제	18	72	108

※표의 학점은 졸업기준 전공 최소 이수학점으로 주전공 학과(부)의 필수 교과목 및 교양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갖추어지므로 졸업 최소 이수학점이 증가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 ] 복수전공 · [ ] 부전공 이수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처 리 기 간

신청인	성명	소속 학과
	학번	학년/반
	수료 학점	연락처

신청하는 학과(전공)	학과명	전공명

「대전보건대학교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학생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신청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학과의 장 (서명 또는 인)

신청 학과의 장 (서명 또는 인)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서류	1. 성적증명서

유의 사항

1. 연락처에는 본인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학년에는 신청일 당시 본인의 현재 학년을 기재합니다.
3. 수료 학점에는 신청일이 속한 학기 말까지 수료할 경우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점을 기재합니다.
4. 첨부 서류인 성적증명서는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된 정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복수전공 · 부전공 이수 예정자 명부

연번	선발 학기		전공 구분	학생 정보					소속 학과		이수 학과		승인 여부	비고
	학년도	학기		학번	성명	상태	학년	이수 학기	학과	전공	학과	전공		

주 : 1. 상태에는 해당 학생의 학적 상황(재학, 휴학, 수료, 졸업, 제적)을 기재한다.
2. 이수 학기에는 조회일 현재 해당 학생의 이수 학기 수를 기재한다.
3. 승인 여부에는 조회일 현재 해당 학생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진행 상황(승인, 포기, 신청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부전공 이수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소속 학과		
	학번		학년/반		
이수 전공 (복수전공)	학과명		전공명		
사정 결과 (복수전공)	① 부전공 필수 교과목 이수 여부		② 부전공 이수 인정 학점 취득 여부		인정 판단 (가/부)
	이수한 교과목 수	지정한 교과목 수	이수 학점	최소 학점	

판정 확인	확인자	확인자
	학과장 (복수전공· 부전공 학과)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소속학과) (서명 또는 인)

「대전보건대학교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현재 이수 중인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학생의 부전공 이수 변경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학과의 장 (서명 또는 인)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서류	1. 성적증명서	

유의 사항

1. 음영 표시는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작성하는 항목이오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졸업일 전 6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전공으로 인정받은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주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됩니다.
4. 첨부 서류인 성적증명서는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된 정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 ] 부전공 · [ ] 복수전공 포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소속 학과
	학번	학년/반
포기하는 학과(전공)	학과명	전공명
포기 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보건대학교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학생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포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소속 학과(전공)의 장 (서명 또는 인)

이수 학과(전공)의 장 (서명 또는 인)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유의 사항
1. 졸업일 전 6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포기에 따라 이수가 취소되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주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 복수전공 · [ ] 부전공 이수 인정원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소속 학과
	학번	학년/반

이수 전공	학과명	전공명

	번호	이수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한 학년도-학기	취득 학점	취득 성적	비 고
교과목 이수 내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음영 표시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2쪽)

사정 결과	취득 학점			졸업 시험 (복수전공만 작성) (가/부)	인정 판단 (가/부)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계		
	비 고				

판정 확인	확인자			
	학과장 (복수전공·부전공 학과)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소속학과)	(서명 또는 인)

「대전보건대학교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위와 같이 이수하여 인정받았으므로 이에, 이수 인정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 학과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성적증명서	

유의 사항

1. 음영 표시는 전공별 담당자가 작성하는 곳이므로,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졸업 시험 항목은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만 해당되며, 복수전공 학과에서 이수 인정 요건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부전공은 필수 지정 교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인정됩니다.
4. 복수전공의 이수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복수전공 학과의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
   ② 복수전공 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이수 인정 요건을 달성